

이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소관부서 :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제정 1996· 4· 12 규칙 제 72호
 개정 1998· 10· 19 규칙 제136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1998· 12· 30 규칙 제147호
 개정 2005· 7· 13 규칙 제315호
 개정 2008· 7· 25 규칙 제37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9· 9· 30 규칙 제403호
 일부개정 2016· 7· 5 규칙 제587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1· 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 2· 28 규칙 제66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거 이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30>

제2조(설치) 심의회는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1998· 10· 19>

제3조(구성) 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 7· 13, 2008· 7· 25, 2009· 9· 30, 2016· 7· 5, 2019· 1· 1>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지역에 있는 농업관련 고등학교의 교원 1인
 - 나.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천시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경기동부과수농업협동조합장
3. 농촌지도자이천시연합회장, 이천시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이천시연합회장을 포

함한 소재 농업단체대표 8인이내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포함한 4인이내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이천시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진흥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지도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8·10·19, 1998·12·30, 2009·9·30>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0·19>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는 위원장은 심의회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2·2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人以下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진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서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의로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의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 통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9 규칙 제136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1998·12·30 규칙 제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3 규칙 제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25 규칙 제37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이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농림과장, 축산과장”을 “농정과장, 축산임업과장”으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부칙 <2009·9·30 규칙 제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5 규칙 제587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이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축산임업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9·1·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이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20·2·28 규칙 제66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